

예 산 총 칙

2011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00,203,774	9,006,113
일반회계	223,261,803	6,697,854
특별회계	76,941,971	2,308,259
공기업특별회계	7,251,053	217,532
의령친환경골프장지방직영기업공기업특별회계	7,251,053	217,532
기타특별회계	69,690,918	2,090,72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0,453,759	313,613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94,988	17,850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916,561	27,497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28,270,472	848,114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0,981,207	329,436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776,742	143,302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2,150,508	64,515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1,042,423	331,273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384,237	11,527
기반시설특별회계	120,021	3,601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생 략"

제 4 조 "생 략"

제 5 조 "생 략"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851,727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5,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